



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817호 2014. 05. 23. (금)

고 시

- 삼척시고시 제2014-58호 도로명주소 부여 개별 고시 ━━━━━━━━ 2
- 삼척시고시 제2014-59호 도로명주소 폐지 개별 고시 ━━━━━━━━ 3

공 고

- 삼척시공고 제2014-340호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 삼척시공고 제2014-342호 삼척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8
- 삼척시공고 제2014-343호 삼척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7
- 삼척시공고 제2014-350호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

공										
람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고시 제2014-58호**도로명주소 부여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의거 우리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개별 고시합니다.

2014. 05. 23.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새주소)	고시일	부여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중마읍리 21-1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재로 2416	20140523	건물 신축	20090626	자연지형 명칭 반영(문의재로)	
2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무건리 75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기길 364-188	20140523	건물 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777-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양서원1길 16-36	20140523	건물 신축	20090626	행정구역, 문화재복합명칭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디자인과(☎570-394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05.23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삼척시고시 제2014-59호

도로명주소 폐지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거 우리시 건물
멸실 등에 따른 폐지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5. 23.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폐지:

순번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비고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15-6	20140523	건물 철거	
2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13-48	20140523	건물 철거	정상동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디자인과(☎570-394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등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삼척시 공고 제2014-340호

삼척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 20일

삼 척 시 장**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건축법」(법률 제12246호, 2014.01.14) 및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의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개정
(안 제17조제1항제3호, 제5호)

- 제3호 : 건축물의 높이 1층 이하, 높이 4미터 이하 → 3층 이하일 것
- 제5호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농어업 및 축산업용 건축물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모두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공개공지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 신설(안 제72조제5항)

-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중이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4년 06월 08일까지 삼척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방법:전화 033)570-3452, 전자우편 : www.samcheok.go.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기간 : 2014. 05. 20 ~ 2014. 06. 08 (20일간)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을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허가”로, “건축허가”를 “건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3층 이하일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제7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27조의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중이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이미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받은 건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가설건축물) ① ----- -----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허가----- ----- 건축-----.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의 높이는 1층 이하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일 것	3. 3층 이하일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영 별표 1 제1호 · 제3호 · 제4호 · 제14호에 해당하는 용도 및 농 · 어업 및 축산업용 건축물에 한한다.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 ④ (생 략) <신 설>	제7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27조의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공중이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삼척시공고 제2014-342호

「삼척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9조에 따라 삼척시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의 장애인
- 명칭및 위치 주요사업 (안 제3조, 제4조)
 -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쉼터, 장애인거주시설
- 운영시간 (안 제5조)
 - 09 ~18시 (토요일,공휴일 휴무), 장애인거주시설 연중운영

- 이용 및 고용대상 (안 제6조)
 - 주민등록상 장애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수급자 우선고용)
- 이용제한 (안 제7조)
 - 전염선질환, 안전 및 공공질서해칠우려자, 그밖의 제한이필요한자
- 이용자선정등 (안 제8조) -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 : 장애아동
- 이용료 (안 제9조)
 - 장애인목욕장 : 1회 1명당 1,000원
 - 장애인이동지원센터 및 휠체어리프트차량이용료: 자체운영규정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복지법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2조에 정하는 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름
- 위탁운영 (안 제10조)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의 반환 (안 제11조)
 - 법령 및 보조조건위반, 사업목적외사용, 허위또는 부정한방법등
- 수탁자의 의무 (안 제12조) - 선량한관리자로 의무와 책임
- 위탁계약의 해지 (안 제13조) - 사유발생시 위탁계약해지등 조치
- 지도.감독 (안 제14조) -년1회 정기검사
- 자체운영규정 (안 제15조) -관련법규와 조례의범위에서 자체 운영
- 준용규정 (안 제16조) -장애인복지법, 삼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준용
- 시행규칙 (안 제17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정함
- 부칙 (안 제1조) - 공포한날부터 시행
 - 부칙 (안 제2조) - 다른 조례 폐지
 - 삼척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 삼척시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 부칙 (안 제3조) -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사회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 전 화 : (033) 570-3328
 - F A X : (033) 570-3138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9조에 따라 삼척시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삼척시 관내에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종합복지센터 : 삼척시 중앙로 28(사직동)
2.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 : 삼척시 중앙로 28(사직동)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삼척시 중앙시장길71 (남양동)
4. 장애인쉼터 : 삼척시 중앙로 28(사직동)
5. 장애인 거주시설 :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회로114

제4조(주요사업)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종합복지센터
 - 가. 민원봉사실 운영
 - 나.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영
 - 다. 목욕장 운영
 - 라.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센터 운영
 - 마.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 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사.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및 사업성 강화 사업

- 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 자. 고용 및 재활사업
- 차. 직업평가상담 및 사회적응훈련
- 카.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
 - 가. 상담, 진단 및 평가
 - 나.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 다. 재활치료
 - 라. 재가지원 및 가족지원 서비스
 - 마. 정보 및 첨단기술서비스
 - 바. 장애아동발달 재활을 위한 기초조사
 - 사. 그 밖에 장애아동발달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
-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가. 재활치료
 - 나.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 다. 교육지도
 - 라.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 교육지도
 - 마. 그 밖에 주간보호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 4. 장애인쉼터
 - 가. 문화·취미·오락 활동 지원
 - 나. 건강생활 상담·지도 및 취업 알선
 - 다.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5. 장애인 거주시설
 - 가. 생활보호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 나.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 다. 그 밖에 보호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시설 운영

제5조(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5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연중 운영한다.

제6조(이용 및 고용대상) ① 시설의 이용대상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장애인수급자를 우선 고용한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이용자 선정 등) ①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의 이용자는 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 중에서 선정하되,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중에서 미등록 장애인으로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로 등록 장애인에 준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의 이용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1. 계획된 서비스가 종료되어 목표를 달성한 경우
2. 서비스 기간 중에 목표를 달성한 경우
3. 장애아동의 사정으로 스스로 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시설의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한다.

1. 장애인복지센터
 - 가. 목욕장 : 1회 1명당 1,000원
 - 나.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휠체어리프트 차량 이용료 : 유류대 실비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에 따름

2.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정하는 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름

제3장 위탁 관리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 사업의 분류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여 분할 위탁하거나 통합하여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장애인종합복지센터내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장애인 근로고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⑥ 제4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시설 내에서 수행한다. 다만,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시설 내에서 위탁사무의 전부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읍·면·동에 지소를 두어 위탁사무의 일부를 수행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장으로부터 보조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보조금과 사업운영 수익금을 근로장애인의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외부시설의 원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 분실,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작업장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삼척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삼척시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삼척시 공고 제2014-343호

「삼척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1. 제안이유**

삼척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등록장애인
 - 자립생활 : 동등한 기회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유지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중복장애 3급
 - 보호자 :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은세대나 부양의무자
 - 유료방송 : 채널단위,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
 - 방송사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 마련
- 자립생활 지원신청 및 지원규정 (안 제4조, 제5조) : 예산범위에서 지원
- 교통보조수당 지급대상자 및 기준규정 (안 제6조, 제7조) : 월 20,000원 이내
- 교통보조수당신청 등을 정함 (안 제8조) : 읍면동장에게 신청
- 교통보조수당 대상확인 및 지급절차를 정함 (안 제9조)
: 읍면동장 확인 → 시장에게 제출
- 교통보조수당 지급의 중지등 규정 (안 제10조) : 시설입소, 전출, 말소 등
- 교통보조수당 대상 비치 등 관리 규정 (안 제11조)
- 유료방송 이용요금지원 대상 (안 제12조) : 중증장애인가구
- 유료방송 이용요금지원 협약의 체결 (안 제13조) : 방송사와 협약체결
- 유료방송 이용요금지원 지원내용(안 제14조)
: 방송, 인터넷 기본요금 및 셋탑박스 사용료
- 유료방송 이용요금지원 신청 (안 제15조)
: 읍면동장 → 시장에게 제출 →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
- 유료방송 이용요금지원 명부작성 및 관리 (안 제16조)
- 유료방송 이용요금지원 지원중지 등 (안 제17조)
: 관외이전, 사망 및 계약해지, 타인양도 등
- 업무위탁 (안 제18조)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 지도점검 (안 제19조) : 위탁운영시 보조금 집행 확인
- 규칙 (안 제20조) :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함
- 부칙 (안 제1조) : 공포한날부터 시행
부칙 (안 제2조) : 삼척시중증장애인교통보조수당 지급조례 폐지
부칙 (안 제3조) : 조례 시행전 삼척시중증장애인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신청된 것은 지원신청을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1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사회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 전 화 : (033) 570-3328
 - F A X : (033) 570-3138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다른 국민들과 동등한 기회와 참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중증장애인의 분류표상 장애등급 1급, 2급, 중복장애가 있는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유료방송”이란 계약에 따라 수 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 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6.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자립생활지원

제4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장애와 사회활동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습득 훈련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취업알선 및 홍보 지원
8. 그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제6조(지급대상자)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 된 사람 중 수당 신청일 현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제가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수당은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의 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자가 사망·전출 등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의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이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다.

제9조(대상 확인 및 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체거주 여부
2. 신청인의 자격 확인
3. 그 밖에 특이사항 등

② 제1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제8조에 따라 매월 25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지급중지 등) 읍·면·동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5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전출·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4. 각 호에의거 과오납되었으나 독촉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읍·면·동장은 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제12조(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가구로 한다.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12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 기간,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내용) ① 제12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셋탑박스(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셋탑박스(Set Top Box) 사용료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신청)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 ① 제15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중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시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하였을 때

②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독촉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지도점검) 시장은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 한다.

제3조(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증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변경)신청서

등록증증 장애인 인적사항	주 소	성명	생년월일	장애인 등급	지급계좌			연락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삼척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보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관리 대장(제11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연락처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지원대상자	주소				
	연락처				

「삼척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확인사항	▪ 지원대상자 여부 : ▪ 주민등록 등재 및 실거주 여부 :		(직급) (성명)	인
확인기관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청 접수대장(제16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장(제16조 관련)

삼척시 공고 제2014-350호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삼 척 시 장**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제안이유**

개업 중인 변호사에 국한되어 있는 삼척시 고문변호사의 자격기준을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변호사로 위촉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고문변호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범위 개정(안 제2조)
 -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 변호사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삼척시청 기획감사실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우편번호:245-701

전 화 : 033-570-3714 FAX : 033-570-313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를 “변호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고문변호사는 시”를 “고문변호사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해촉일”을 “위촉일 및 해촉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삼척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u>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u> 중에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2조(위촉) ----- ----- <u>변호사</u> ----- -----
제3조(직무) ① (생 략) ②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시 또는 시장이 제기하는 소송 중 수임 받은 쟁송사건을 성실히 수행한다. ③ · ④ (생 략)	제3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문변호사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 ----- -----.
제4조(위촉기간) ① (생 략) ②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내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제4조(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
제5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 ③ (생 략)	제5조(수당) ① ----- 대해서는----- ----- 범위----- -----. ----- 위촉일 및 해촉일----- ② · ③ (현행과 같음)